

[사 건 명] 행심 2017 - 17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○○○○

□ 피청구인 : ■■■■고등학교장

[주 문]

피청구인이 2017. 04. 03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사회봉사 5일,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』 처분을 취소하고 『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,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』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7. 04. 03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5일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 ○○○○, ◇◇◇◇, ■■■■, ●●●●, ▲▲▲▲ 등은 ●●●●고등학교 ■■■학년 ○반 같은 반 학생들이다.

나. ◇◇◇◇, 청구인, ■■■■ 등 학생들은 2017. 3. 3.부터 같은 해 3. 4.까지 영어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였는데, ◇◇◇◇이 담임선생님 심부름으로 첫날 늦게 참석하였고 다음날도 학원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늦게 참석하여 ◇◇◇◇이

동아리를 만들었으나, 동아리 리더에 청구인, 부리더에 ■■■이 당선되었고, 이에 같은 달 4일밤 ◇◇◇이 ■■■에게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,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청구인이 ◇◇◇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페이스북에서 싸우게 되었다.

다. 그 뒤 청구인과 ■■■가 동아리를 나갔으며 쉬는 시간 중간에 교실에서 “◇◇◇ 개 싫어”라고 소리치고 다른 학생들에게 욕을 하였다.

라. 청구인과 ■■■는 2017. 3. 9. ◇◇◇과 같이 밥을 먹는 ●●●에게 밥을 먹지 말라 하였고, 다른 친구에게도 전달하라고 시켰다.

마. 그러자 ◇◇◇은 학교폭력으로 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, 2017. 3. 14. ●●●은 학생부에 위의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하였다.

바. 2017. 3. 27.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사회봉사 5일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 하였다.

사. ◇◇◇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인 치료 및 요양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며, 그 후 무단결석을 하다 2017. 5. 10.부터 자퇴를 하였다.

## II. 청구인의 주장요지

### 1. 청구인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.

- 가.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신청한 사안에 대해 피청구인 측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려고도, 확인하지도, 중재하려고도 하지 않고 처분하였다.
- 나. ○○○이 “◇◇◇과 같이 밥 먹기 싫다며 어떻게 해야 되냐?” 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너가 선택하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는데, ○○○은 ■■■와 청구인이 ◇◇◇과 밥을 같이 먹지 말라하였다며 거짓진술을 하여, 하지 않는 말로 인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.
- 다. ◇◇◇에 대한 말은 ■■■와 둘이 있을 때 화가 나서 서로 이야기한 것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한 적은 없다.
- 라. 이에 ○○○이 진술서를 수정하러 다시 학생부를 찾아갔고 담당교사가 화를 내서 진술서를 수정할 수 없었고, 이에 거짓진술로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.
- 마. 한편,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보충서면에서 교실에서 “◇◇◇ 개싫어” 라는 발언을 외친 적이 없으며, 쉬는 시간에 개라고 지칭하며 특정한 욕을 한 것은 ◇◇◇이 아니었고, ◇◇◇ 생각에 정황상 본인이었다 주장을 한 것 뿐인데 가해자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.
- 바. 그리고 ○○○이 2017. 3. 9. ◇◇◇과 밥을 같이 먹는다며 본인이 ◇◇◇이 불편한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하여 ■■■가 너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며 너가 선택하라며 말하기 어려우면 ○○○나 같이 먹는 애들에게 물어보라하였고 청구인은 너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거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말하였다. “◇◇◇이네 욕을 하고 다녔으니 보기 안좋으니 당분간 밥을 먹지 말라”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

주장한다.

### Ⅲ. 피청구인의 주장

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가. 학교측에서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해당학생, 목격학생들의 진술 및 Ⅲ학년 ○반 전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고 판단하였다.
- 나. 담임 및 상담교사가 관련 학생들을 여러 차례 상담하고 서로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양측 모두 뜻을 굽히지 않아 해결되지 않았으며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하여 처분하였다.
- 다. ○○○이 진술서를 변경하고 싶다고 찾아왔으나 상담 후 본인의 진술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으며, 진술서 변경에 대해 부탁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진술한 학생 보호를 위해, 담당교사가 진술서를 바꾸지 못하게 한 것으로 말하게 하였다.
- 라. 공개적으로 욕을 하거나, 반 뒤편에 모여 비난을 하거나, 같이 밥을 먹는 두명의 학생에게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하여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없게 한 것, 체육시간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하여 결과적으로 ◇◇◇ 학생을 따돌리고 반 친구들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든 점,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5월 10일부터 자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.

## Ⅳ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

### 1. 관계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7조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### 2. 판단

#### 가. 사실관계에 대하여

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도, 확인하지도, 중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하지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, ◇◇◇, ■■■, ●●●의 각 진술서 외에 □□□, ▲▲▲, ⊕⊕⊕ 등 학생들의 각 진술서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심리 및 그 외 증거들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가해학생 청구인과 피해학생 ◇◇◇의 진술 외에도 ●●●의 진술, 담임교사 □□□, 전문상담사인 ▲▲▲, 같은 반 학생들인 ⊕⊕⊕ 등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◇◇◇ 등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.

한편, 청구인은 청구인과 ■■■가 ●●●에게 당분간 ◇◇◇과 같이 밥을 먹지말라고 하지 않았고 ●●●이 ◇◇◇과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●●●에게 자신이 선택하라는 식으로 대답

을 하였다고 주장한다.

하지만 2017. 3. 14.과 같은 해 4. 11. 각 작성된 ○○○의 각 진술서를 살펴볼 때 “◇◇이랑 같이 밥을 먹지 말라”, “(◇◇에게) 대놓고 말해야 정신을 차린다.” 는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, 일관성이 있으며, ■■■의 2017. 3. 15., 같은 해 4. 7. 각 진술서 또한 청구인과 ■■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○○○에게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, 그 외 청구인과 ■■■가 ○○○에게 최초 진술의 번복을 요청한 경위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이 ○○○에게 ◇◇◇과 밥을 같이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청구인은 ◇◇◇에 대한 말은 ■■■와 둘이 있을 때 화가 나서 서로 이야기한 것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, ■■■학년 ◎반 반장인 ⊕⊕⊕, 같은 반 학생들이인 ■■■■, ◆◆◆ 등의 각 진술을 살펴볼 때 청구인과 ■■■는 교실 등 같은 반 학생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◇◇◇에 대한 말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.

#### 나.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

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2017. 3. 27.과 같은 달 30. 각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에게 사회봉사 5일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 하였는 바, 이러한 처분조치가 적정한지 살피기로 한다.
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. 3. 27.과 같은 달 30. 이 사건에 대해 심

리결과 과반수 이상의 협의의견에 따라 ‘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별 적용세부기준’의 판단요소 및 판정 점수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0점(없음), 학교폭력의 지속성 2점(보통), 학교폭력의 고의성(낮음) 1점,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3점(낮음), 화해정도 3점(낮음)으로 판단하여 합계 9점이므로,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4호 사회봉사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먼저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해 살펴건대, 위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, 청구인과 ◇◇◇의 관계, 학교생활,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낮다고 판단되며, 화해정도의 경우 청구인과 ◇◇◇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고, ◇◇◇ 또한 화해를 원치 않아 양자간의 화해를 기대할 수 없는 극히 대립적인 상황이라 화해정도를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화해정도를 낮다고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, 그 외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할 때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으로도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5일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를 주문과 같이 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로 변경한다.

## V. 결어

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,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.